

2022년 강원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강원도지사 (인)

- ◆ 우리 도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조 3,48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7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2조 9,223억원)보다 4조 5,740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8,40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조 2,19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59억원입니다.
- ◆ 우리 도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7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4.66%입니다.
- ◆ 우리 도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85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투입을 기본적인 재정 운영 기조로 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효율화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확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노력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1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조정실 예산과 송창근(033-249-4167)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 원 도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83,483	79,701	3,781	129,223	116,032	13,192	
	세출예산 (기금포함)	83,483	79,701	3,781	129,223	116,032	13,19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6.77	24.81	1.96	37.5	33.31	4.19	
	재정자주도	44.66	41.51	3.15	48.17	43.32	4.85	
	통합재정수지	785	△1,545	2,330	△2,308	△1,175	△1,113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 상황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7	30	△3	21	22	△2	
	행사·축제 경비편성 현황	85	128	△43	135	131	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4	9	△5	10	10	0
		시책추진	16	15	1	20	20	0
	지방의회 관련경비	9	9	0	10	10	0	
	지방보조금	815	629	186	983	1,023	△39	
1인당 기준경비 편성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 세감액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 세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형 지방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348,262	6,376,000	0	740,094	1,232,16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105,354	6,724,094	7,443,524	7,970,145	8,348,26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강원도의 세입예산(기금포함)은 2018년부터 연평균 8.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조 3,483억원으로 전년대비 3,7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수입과 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의 증가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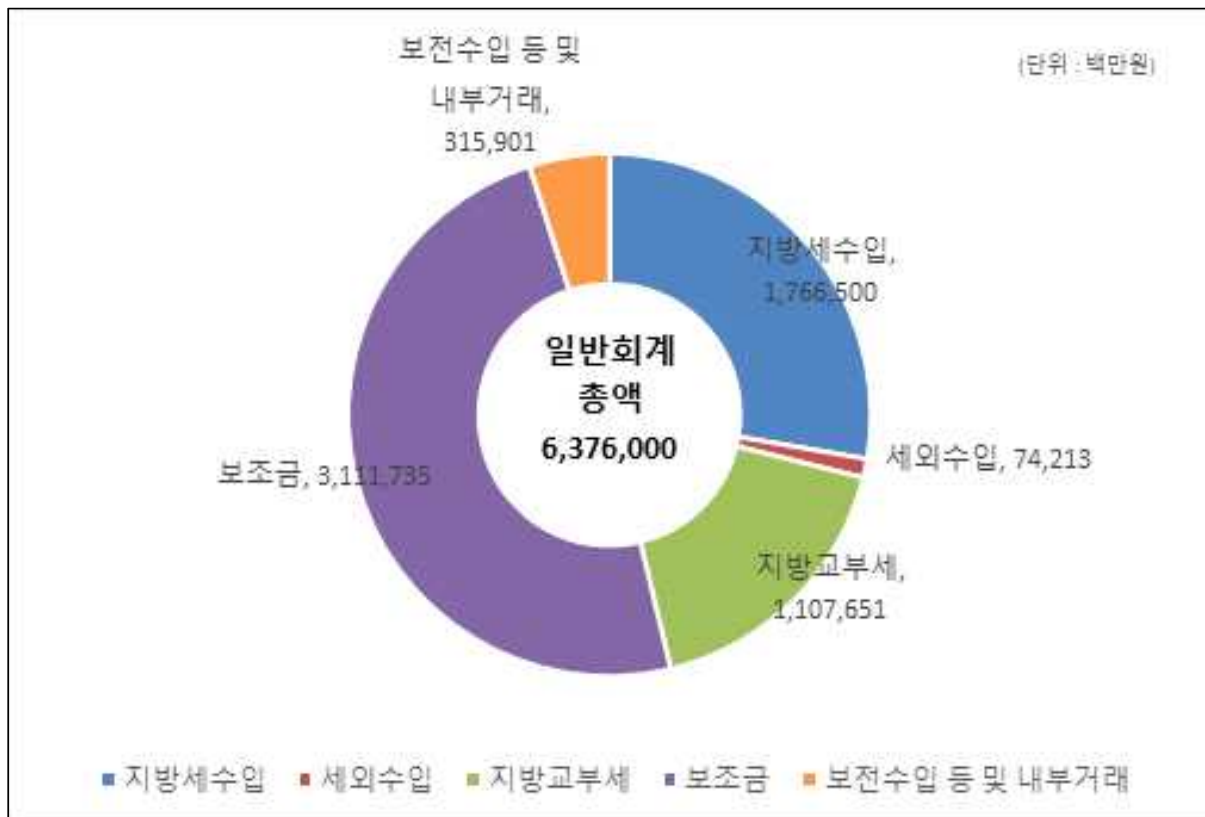
❖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50,000	100	4,786,400	100	5,363,998	100	5,912,800	100	6,376,000	100
지방세	1,015,000	23.33	1,135,000	23.71	1,520,100	28.34	1,523,000	25.76	1,766,500	27.71
세외수입	66,689	1.53	66,391	1.39	78,616	1.47	69,414	1.17	74,213	1.16
지방교부세	954,000	21.93	1,052,000	21.98	1,024,055	19.09	959,393	16.23	1,107,651	17.37
보조금	2,160,486	49.67	2,382,263	49.77	2,525,979	47.09	3,016,572	51.02	3,111,735	48.80
지방채	0	0.00	0	0.00	0	0.00	142,500	2.41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3,824	3.54	150,746	3.15	215,247	4.01	201,922	3.41	315,901	4.9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강원도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348,262	6,376,000	0	740,094	1,232,1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105,354	6,724,094	7,443,524	7,970,145	8,348,2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강원도의 세입예산(기금포함)은 2018년부터 연평균 8.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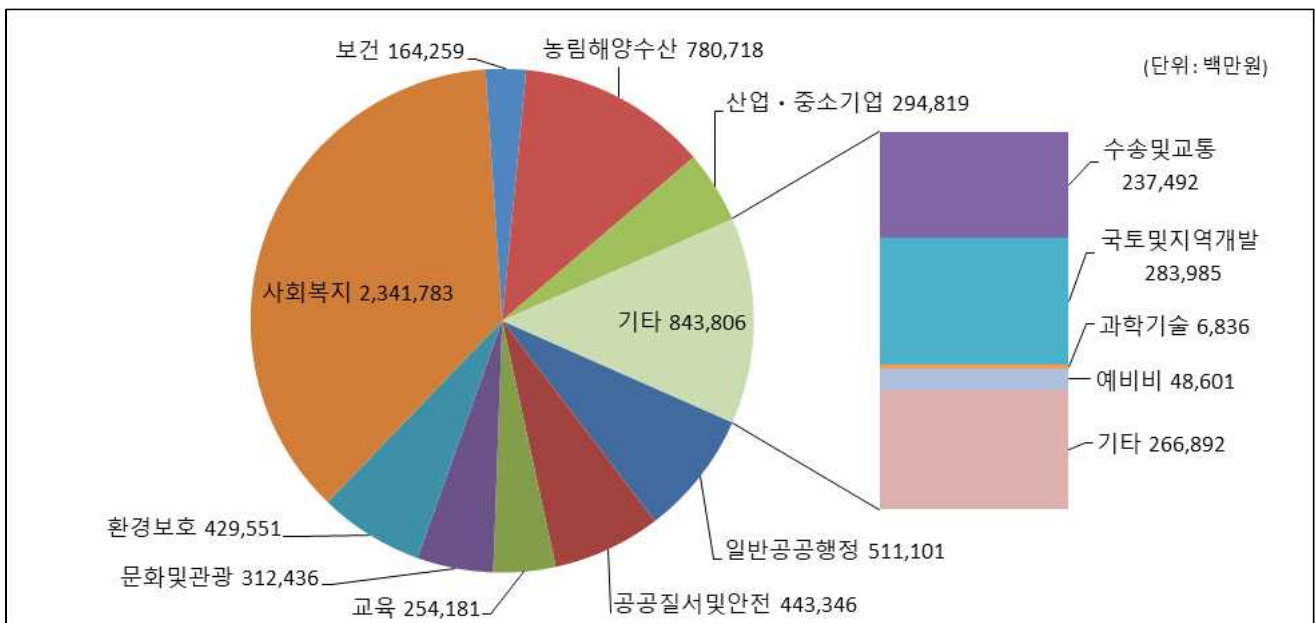
❖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50,000	100	4,786,400	100	5,363,998	100	5,912,800	100	6,376,000	100
일반공공행정	358,287	8.24	380,505	7.95	451,360	8.41	429,720	7.27	511,101	8.02
공공질서 및 안전	147,886	3.40	156,127	3.26	153,932	2.87	441,769	7.47	443,346	6.95
교육	214,209	4.92	218,616	4.57	227,401	4.24	232,083	3.93	254,181	3.99
문화 및 관광	236,511	5.44	278,025	5.81	313,828	5.85	309,578	5.24	312,436	4.90
환경 보호	286,151	6.58	262,582	5.49	319,154	5.95	405,107	6.85	429,551	6.74
사회 복지	1,390,627	31.97	1,613,224	33.70	1,882,394	35.09	2,090,812	35.36	2,341,783	36.73
보건	94,927	2.18	116,906	2.44	137,619	2.57	157,737	2.67	164,259	2.58
농림해양수산	494,968	11.38	526,606	11.00	573,305	10.69	705,108	11.93	780,718	12.24
산업·중소기업	171,509	3.94	165,810	3.46	251,686	4.69	250,361	4.23	294,819	4.62
수송 및 교통	185,071	4.25	224,605	4.69	219,685	4.10	261,391	4.42	237,492	3.72
국토 및 지역개발	254,260	5.85	295,759	6.18	313,714	5.85	325,146	5.50	283,985	4.45
과학기술	2,159	0.05	2,114	0.04	2,894	0.05	3,112	0.05	6,836	0.11
예비비	62,495	1.44	73,654	1.54	51,802	0.97	46,135	0.78	48,601	0.76
기타	450,940	10.37	471,865	9.86	465,226	8.67	254,740	4.31	266,892	4.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12,601,980	13,820,281	1,218,302	9.67
강원도	7,970,145	8,348,262	378,117	4.74
강원도교육청	3,346,399	3,891,840	545,441	16.30
공사·공단	377,596	807,760	430,164	113.92
출자·출연기관	907,840	772,420	-135,420	-14.9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강원도개발공사
- ▶ 출자·출연기관(26개) : (주)강원심층수, (주)강원중도개발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주)강원수출,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관광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강원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77 (29.29)	6,193,300 (6,193,300)	1,658,013 (1,813,914)	4,219,386 (4,219,386)	(160,000)	315,90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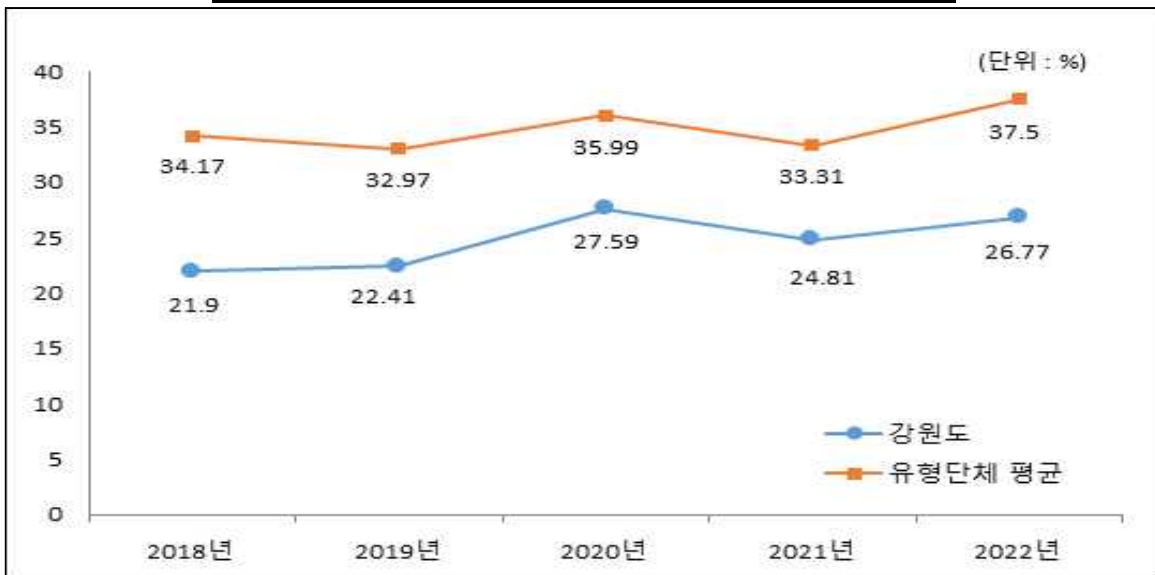
- ▶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여타·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1.90 (25.58)	22.41 (25.67)	27.59 (30.48)	24.81 (27.37)	26.77 (29.2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도 재정자립도는 26.77%로 유형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7.5%보다 10.73%p 낮습니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비중이 상승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1.96%p 높아졌습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강원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4.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4.66 (47.17)	6,193,300 (6,193,300)	2,765,663 (2,921,565)	3,111,735 (3,111,735)	0 (160,000)	315,90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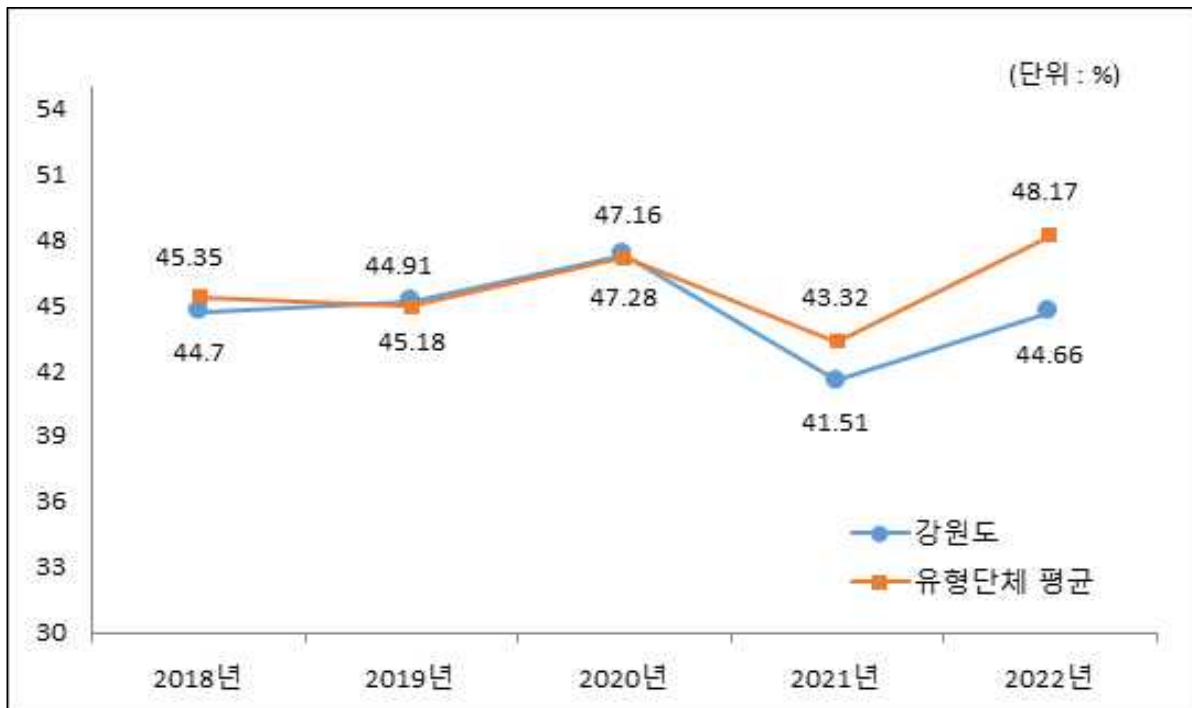
- ▶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여타·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44.70 (48.38)	45.18 (48.44)	47.28 (50.17)	41.51 (44.07)	44.66 (47.1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도 재정자주도는 44.66%로 유형단체 평균보다 3.51%p 낮으나, 전년 대비 3.15%p 향상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강원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569,689	6,790,283	253,431	53,945	△199,486	99,614	6,590,797	△21,108	78,506
일반회계	6,121,295	5,899,655	1,332	1,200	△132	93,373	5,899,523	221,772	315,145
기타 특별회계	344,561	729,374	1	0	△1	6,241	729,373	△384,812	△378,571
기 금	103,833	161,254	252,099	52,745	△199,353	0	△38,099	141,932	141,932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 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37,474	△185,458	△339,898	△289,446	△21,108
통합재정수지 2	△11,799	△46,611	△199,584	△154,528	78,506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증가로 총세입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해 총세출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347,601	8,556,289	8,770,197	8,989,452	9,214,188	43,877,728	2.50%
자 체 수 입	1,988,293	2,014,678	2,096,430	2,178,663	2,265,912	10,543,977	3.30%
이 전 수 입	4,586,093	5,027,808	5,107,303	5,236,916	5,434,374	25,392,493	4.30%
지 방 채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3,215	1,343,803	1,396,464	1,403,873	1,343,903	7,091,258	-4.30%
세 출	8,347,601	8,556,289	8,770,197	8,989,452	9,214,188	43,877,728	2.50%
경 상 지 출	2,127,553	2,085,493	2,095,334	2,053,324	2,136,785	10,498,488	0.10%
사 업 수 요	6,220,048	6,470,796	6,674,864	6,936,129	7,077,403	33,379,240	3.3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 값} / \text{기준년도 값})^{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7	344,49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25,098
성별영향평가사업	88	244,0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75,32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 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small>※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 절차는 제외</small>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 의견서 작성

- 2022년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183	4	183	-	-	-	-

▶ 당초예산 기준

❖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8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개설 및 별도 카페고리 제작	비예산	-
	동물 방역과	애완동물 놀이터 조성	51	신규
	유통 원예과	군납 농산물 연계공급 활성화	18	
	교통과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114	계속

❖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운영현황 內 포함)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21. 4. 13.

- 분과 : 4개(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인원 : 56명(당연직 8명, 위촉직 48명)
 - 당연직(8명) : 분과별 소관 실·국·본부장 2명
 - 위촉직(48명) : 공개모집(40),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추천(8)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임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1, 간사(예산과장)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및 예산편성에 대해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등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2022년도 예산안 도민제안사업 공모

- 기간 : 2020. 6월 ~ 2021. 5월
- ※ 2021. 6월 신청 분부터 2023년도 예산편성 시 검토

- 대상사업 : 강원도 자치사무(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중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
- 제안방법 : 홈페이지, 우편·방문, 현장접수 등
- 제안사업 선정: 4건(총 37건 신청)
※ 선정절차: 부서 검토(6월) → 분과위원회 심의(7~8월) →전체회의(9월)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목록>

(단위 : 백만 원)

제안사업명	예산요구액	부서
합 계	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및 별도카테고리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강원도청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이트 업데이트 및 별도 사이트 개설 	5	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 놀이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3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에 애완동물을 위한 놀이터 조성 	1,500	동물 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납 농산물 연계공급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도내산 농산물을 도내 연계농협에서 반가공하여 군납하는 경우 물류비·반가공비 지원 	200	유통 원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 상향 지급 	200	교통과

□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추진

- 기간/대상 : 연중/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도민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도민사이버배움터에서 수강(공개강좌)
- 강의내용 : 8강(참여예산의 도입과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법과 제도 등)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강원도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3	216	482	505	7,116,094	6,681,390	434,704
대변인	1	1	9	6	9,939	7,370	2,568
총무행정관	1	2	6	9	89,070	80,800	8,270
기획조정실	1	17	29	27	894,864	847,080	47,785
재난안전실	1	7	13	10	113,240	118,296	△5,056
경제진흥국	1	11	16	18	110,591	88,513	22,078
첨단산업국	1	10	16	30	246,847	202,644	44,203
일자리국	1	7	13	11	319,569	224,403	95,166
글로벌투자통상국	1	10	20	21	47,760	71,642	△23,883
문화관광체육국	1	16	31	47	307,578	295,933	11,645
보건복지여성국	1	20	28	47	2,453,299	2,262,201	191,097
농정국	1	11	36	48	414,160	404,989	9,171
녹색국	1	16	33	41	638,693	589,529	49,164
건설교통국	1	13	28	25	462,366	474,884	△12,518
평화지역발전본부	1	8	12	11	98,412	144,551	△46,139
소방본부	1	27	79	57	665,745	673,026	△7,280
의회사무처	1	1	3	3	16,347	13,793	2,554
농업기술원	1	13	34	35	60,219	66,939	△6,720
환동해본부	1	12	23	23	129,341	86,694	42,64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6	8	5,258	6,917	△1,658
인재개발원	1	1	5	3	5,766	5,887	△121
보건환경연구원	1	2	18	19	18,009	14,820	3,189
감사위원회	1	1	6	1	509	479	30
자치경찰위원회	1	3	8	5	8,512	0	8,51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77	44.66	36.73	31.93	56.39	10.8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116,094	2,670	655	2,015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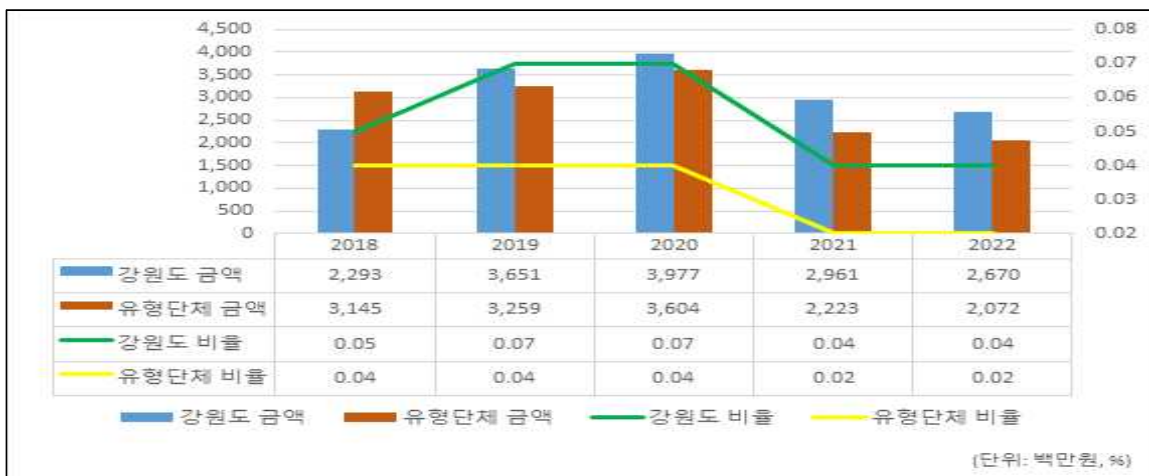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727,826	5,229,691	5,832,410	6,681,390	7,116,094
국외여비 총액 (B=C+D)	2,293	3,651	3,977	2,961	2,670
국외업무여비(C)	944	954	1,058	718	655
국제화여비(D)	1,349	2,697	2,920	2,243	2,015
비율	0.05%	0.07%	0.07%	0.04%	0.04%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 다음은 우리 강원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376,000	8,487	0.13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4,350,000	4,786,400	5,363,998	5,912,800	6,376,000
행사·축제경비	16,130	19,052	21,409	12,777	8,487
비율	0.37%	0.40%	0.40%	0.22%	0.1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170	1,006	167	233	606	8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00	400	400	879	1,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16	1,600	99,04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590	1,596	1,605	1,541	1,6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강원도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068	876	442	227	186	21	8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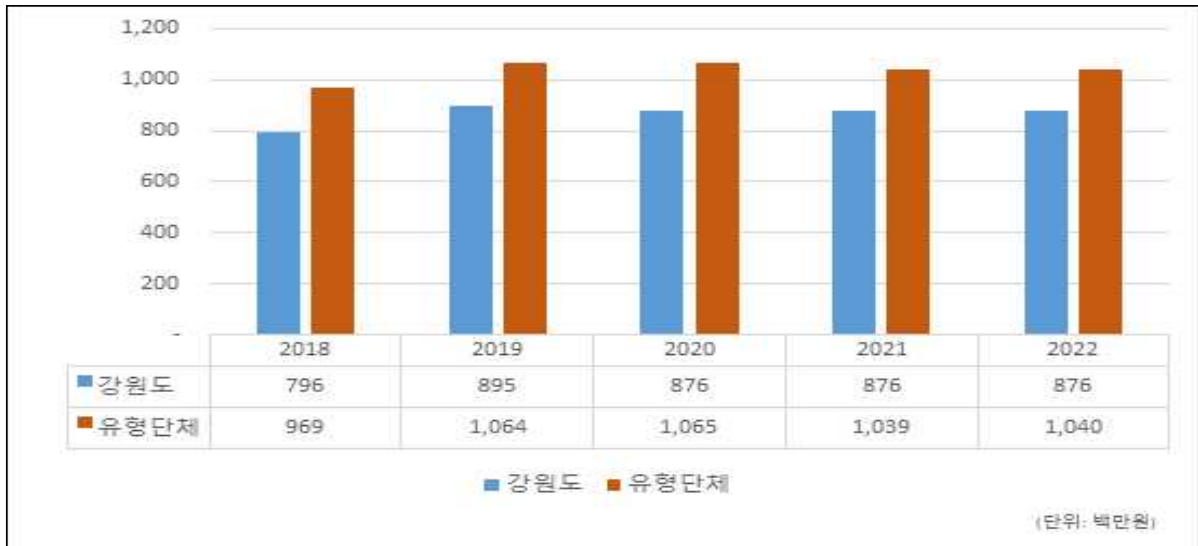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796	895	876	876	87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우리 강원도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 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 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61,819	81,534	81,534	0	50.3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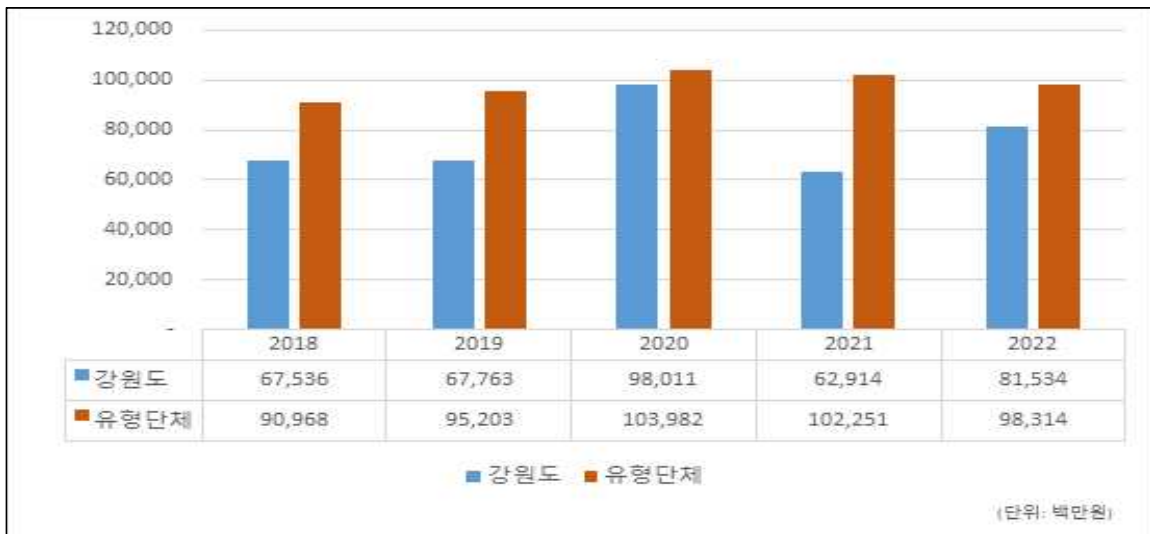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7,536	67,763	98,011	62,914	81,534
한도 내	0	0	0	62,914	81,53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766	14,526,194	1,657
공무원 일·숙직비	2,068	124,130	60

- ☞ 강원도 본청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① 복지포인트 지급, ② 종합건강검진 지원, ③ 생명상해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일·숙직비는 1인당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7,379	11,962
인건비 건전운영	0	277
지방의회경비 절감	115	436
업무추진비 절감	150	54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514	6,388
지방보조금 절감	4,414	6,685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1,186	△2,370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19,535	△34,879
지방세 징수율 제고	9,943	△13,81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4,236	△8,861
경상세외수입 확충	△3,593	△2,41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51	△71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1,332	△9,078
지방세 감면액 축소	130	2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2년에 우리 강원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
합 계		77
감사원 성과감사	도로안전시설 설치지침 상 성능기준 미충족	19
주요 재정절차 위반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	39
정부합동감사	인도(보도)교 설계 부적정	19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2년에 우리 강원도가 지방재정평가(세입증대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 금액
합 계		120
지방재정분야 우수	세입증대분야 장관상 수상	100
지방재정분야 우수	지방세외수입분야 우수단체 선정	20